

이창한 / 5월 / 기초GS / 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56358	23	13.5	36.5	1	0.51%	196
561120	22.5	13.5	36	2	1.02%	
561886	22	14	36	2	1.02%	
563057	21	15	36	2	1.02%	
562840	21.5	14.5	36	2	1.02%	
561307	23	12.5	35.5	6	3.06%	
563252	23	12.5	35.5	6	3.06%	
556203	21.5	13.5	35	8	4.08%	
561090	22	13	35	8	4.08%	
561360	21.5	13.5	35	8	4.08%	
562759	24	11	35	8	4.08%	
563185	23	12	35	8	4.08%	
562623	22	13	35	8	4.08%	
563314	22	13	35	8	4.08%	
561148	23	11.5	34.5	15	7.65%	
563508	23.5	11	34.5	15	7.65%	
561132	23	11	34	17	8.67%	
561373	20.5	13.5	34	17	8.67%	
561891	22.5	11.5	34	17	8.67%	
561900	20.5	13.5	34	17	8.67%	
562503	22.5	11.5	34	17	8.67%	
561129	23.5	10	33.5	22	11.22%	
561298	21.5	12	33.5	22	11.22%	
562284	21	12.5	33.5	22	11.22%	
111111	22.5	10.5	33	25	12.76%	
561094	19.5	13.5	33	25	12.76%	
561938	22	11	33	25	12.76%	
562938	23	10	33	25	12.76%	
556409	21	11.5	32.5	29	14.80%	
556412	21.5	11	32.5	29	14.80%	
559611	23	9.5	32.5	29	14.80%	
561283	21	11.5	32.5	29	14.80%	
561906	22.5	10	32.5	29	14.80%	
561914	22	10.5	32.5	29	14.80%	
561936	21	11.5	32.5	29	14.80%	
562288	20.5	12	32.5	29	14.80%	
556399	21	11	32	37	18.88%	
557152	24	8	32	37	18.88%	
561271	22.5	9.5	32	37	18.88%	
561293	20	12	32	37	18.88%	
561320	22.5	9.5	32	37	18.88%	
561402	23.5	8.5	32	37	18.88%	

561903	21	11	32	37	18.88%
562534	20.5	11.5	32	37	18.88%
556312	20.5	11	31.5	45	22.96%
561137	20	11.5	31.5	45	22.96%
561943	21	10.5	31.5	45	22.96%
556232	17.5	14	31.5	45	22.96%
563058	19.5	12	31.5	45	22.96%
556205	22	9	31	50	25.51%
562349	22.5	8.5	31	50	25.51%
563331	19	12	31	50	25.51%
563440	18.5	12.5	31	50	25.51%
561169	20	10.5	30.5	54	27.55%
561278	19.5	11	30.5	54	27.55%
561431	21	9.5	30.5	54	27.55%
561897	18	12.5	30.5	54	27.55%
561907	20	10.5	30.5	54	27.55%
561933	22	8.5	30.5	54	27.55%
561935	18.5	12	30.5	54	27.55%
562164	19	11.5	30.5	54	27.55%
562184	18.5	12	30.5	54	27.55%
563300	20	10.5	30.5	54	27.55%
561103	20	10	30	64	32.65%
561253	18.5	11.5	30	64	32.65%
561270	19.5	10.5	30	64	32.65%
561349	23.5	6.5	30	64	32.65%
561904	22.5	7.5	30	64	32.65%
561944	20	10	30	64	32.65%
561947	19.5	10.5	30	64	32.65%
561955	20	10	30	64	32.65%
562262	19	11	30	64	32.65%
563605	22	8	30	64	32.65%
561105	19	10.5	29.5	74	37.76%
561118	20	9.5	29.5	74	37.76%
561121	22.5	7	29.5	74	37.76%
561171	19.5	10	29.5	74	37.76%
561203	23	6.5	29.5	74	37.76%
561234	20.5	9	29.5	74	37.76%
561259	21.5	8	29.5	74	37.76%
561930	19	10.5	29.5	74	37.76%
561939	21	8.5	29.5	74	37.76%
563268	21	8.5	29.5	74	37.76%
556337	18	11.5	29.5	74	37.76%
562255	18.5	11	29.5	74	37.76%
556213	18	11	29	86	43.88%
556383	19	10	29	86	43.88%

561170	17	12	29	86	43.88%
561214	20	9	29	86	43.88%
561365	19	10	29	86	43.88%
561894	16.5	12.5	29	86	43.88%
561910	17	12	29	86	43.88%
562648	17.5	11.5	29	86	43.88%
563486	18	11	29	86	43.88%
556214	15.5	13	28.5	95	48.47%
556282	18.5	10	28.5	95	48.47%
561238	19.5	9	28.5	95	48.47%
561419	18.5	10	28.5	95	48.47%
561893	19.5	9	28.5	95	48.47%
561898	21	7.5	28.5	95	48.47%
562590	19.5	9	28.5	95	48.47%
562217	22.5	6	28.5	95	48.47%
562889	18.5	10	28.5	95	48.47%
563420	17	11.5	28.5	95	48.47%
556236	18.5	9.5	28	105	53.57%
556382	20	8	28	105	53.57%
561149	21	7	28	105	53.57%
561911	16.5	11.5	28	105	53.57%
561919	21.5	6.5	28	105	53.57%
561942	21.5	6.5	28	105	53.57%
562852	15.5	12.5	28	105	53.57%
556434	19.5	8	27.5	112	57.14%
561218	21	6.5	27.5	112	57.14%
561276	19.5	8	27.5	112	57.14%
561899	16.5	11	27.5	112	57.14%
561912	16.5	11	27.5	112	57.14%
556416	18.5	9	27.5	112	57.14%
556448	17	10.5	27.5	112	57.14%
563448	23.5	4	27.5	112	57.14%
561097	22.5	4.5	27	120	61.22%
561217	19	8	27	120	61.22%
561889	22	5	27	120	61.22%
562233	20.5	6.5	27	120	61.22%
562449	20	7	27	120	61.22%
563311	17	10	27	120	61.22%
563558	16	11	27	120	61.22%
561290	14	12.5	26.5	127	64.80%
561317	18.5	8	26.5	127	64.80%
561934	17.5	9	26.5	127	64.80%
561937	19	7.5	26.5	127	64.80%
562211	21	5.5	26.5	127	64.80%
561258	15	11	26	132	67.35%

562390	15	11	26	132	67.35%
556360	16	9.5	25.5	134	68.37%
556397	16	9.5	25.5	134	68.37%
561173	17	8.5	25.5	134	68.37%
561229	15	10.5	25.5	134	68.37%
561949	23	2.5	25.5	134	68.37%
556305	15	10	25	139	70.92%
561165	15	10	25	139	70.92%
561896	16	9	25	139	70.92%
562993	14	11	25	139	70.92%
563064	16	9	25	139	70.92%
563426	15	10	25	139	70.92%
563494	12	13	25	139	70.92%
561134	20	4.5	24.5	146	74.49%
561285	17.5	7	24.5	146	74.49%
561287	16	8.5	24.5	146	74.49%
561908	15.5	9	24.5	146	74.49%
556298	13	11	24	150	76.53%
556499	17.5	6.5	24	150	76.53%
561885	16	8	24	150	76.53%
561915	13.5	10.5	24	150	76.53%
561929	16	8	24	150	76.53%
556272	15.5	8	23.5	155	79.08%
561902	16	7.5	23.5	155	79.08%
561913	16.5	7	23.5	155	79.08%
562006	16	7.5	23.5	155	79.08%
563358	15	8.5	23.5	155	79.08%
556373	20	3	23	160	81.63%
556500	12	11	23	160	81.63%
556311	21.5	1	22.5	162	82.65%
559375	15	7.5	22.5	162	82.65%
561098	16	6.5	22.5	162	82.65%
561941	15	7.5	22.5	162	82.65%
561235	17	5	22	166	84.69%
561288	11	11	22	166	84.69%
561905	18.5	3.5	22	166	84.69%
562692	12.5	9.5	22	166	84.69%
562854	13	9	22	166	84.69%
561264	13.5	8	21.5	171	87.24%
561256	13	8	21	172	87.76%
562251	16	5	21	172	87.76%
559826	11.5	9	20.5	174	88.78%
561113	14.5	5	19.5	175	89.29%
561289	17.5	2	19.5	175	89.29%
561887	9.5	10	19.5	175	89.29%

562289	13	6.5	19.5	175	89.29%
561960	19	0	19	179	91.33%
562783	12	7	19	179	91.33%
563074	10.5	8.5	19	179	91.33%
562161	7.5	11	18.5	182	92.86%
562975	6.5	11.5	18	183	93.37%
556408	9	8.5	17.5	184	93.88%
562009	7.5	9	16.5	185	94.39%
556376	9.5	6	15.5	186	94.90%
556377	9	6.5	15.5	186	94.90%
556483	7	8.5	15.5	186	94.90%
563382	8	7.5	15.5	186	94.90%
556301	8.5	5	13.5	190	96.94%
556430	13	0.5	13.5	190	96.94%
562191	8	5	13	192	97.96%
556443	7	5.5	12.5	193	98.47%
561302	6.5	5	11.5	194	98.98%
561294	7.5	3.5	11	195	99.49%
563482	8.5	1	9.5	196	100.00%

[문제 1]

I. 서론(1)

1. 부정청탁

상계행위를 상습 아닌 방어행위라면 민중 혁명적인
가면극이 생기므로 (제2(6)조항) 상습처럼 취급해, 상
중 상계행위로 규정하는 처분으로 불합리(하)하므로 위
구성을 유추해 가능 하는지 문제된다.

2. 중복제기 의의, 취지, 요건

①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
하지 못한다(제259조). ② 선항제인 재판동임을 위한
것이다. ③ 인건은 전항한 당사자 상습의 동일,
같은 계속 중 계속제기이다. ~~④ 상계행위를 민중 혁명적
가면극이 생기므로, 상 중 상계행위로 규정하는 처분~~

3. 항소

(1) 유죄정당 부정소

상계행위를 상습이 아니고 인건의 방어행위이므로
상계행위로 규정하는 처분으로 변호제기하든 중복제기가
아니라 한다. 상계행위를 제1항항이 상소판으로
상계 한 민중이 인용을 근거로 한다.

(2) 유죄정당 긍정소

판결 민중 불신앙을 위해 중복항이라고 한다.



1.1 | 상계로 작성한 채권 조항 판단에 있어 (판결)이 다른 점을 고려 한다. (제216조 2항)

4. 판결

(1) 변상채권형

1.5 | 변상채(1)인 채권의 상계는 경우 재판부는 이의 있음. 변상채권을 시도하여 가판권 받은 행위 및 상계채권 조항이 비당국적임, 그렇다고 별다른 계속 중인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상이 허용되지 않다고 봄수 있음.

(2) 상계상환채권형

1.5 | 변상가지로 명백한 채권소유에서 상계항한 채권은 상계채권 중 동일한 채권이 가한 상환을 변상의 소. 변상권 제(3)항은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부정적 입장이다.

5. 검토

1.1 | 상계상환채권에서 상계항한 조항이 (판결) 항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별다른 고려하면 상계항한 조항과 관련된 타법으로 부정적 (타당함)도.

6. 자동채권

0.5 | 상계상환채권에서 자동채권으로 상계항한 조항이라도 그 계속 중 동일 채권으로 변상채권은 허용된다. 즉 중복채기 아니며 적법하다.

0.5/10



2. 심판(2)

1. 심판장

심계행하는 권리 유권인지, 그중에서 심계행하는 판단(이) 판정 권자로서 (판정권, 상(02) (제2(6)2항) 상등판정 위임권 / 재판 후 심계행하는에 제공된 기술내용 이행 권리를 권리가 재대로 금지되는지 분기된다.

2. 심계행하는 사실, 재판 유권 여부

"심대행이 복안에 의해 행하는 판정 권자는 심대행 등의 행하여 권리 갖는 소유자인지, / 행하는법으로서의 심계행하는 등재권 관련 행하는 것을 전제로 행하는 예외적 행하는 으로서 '심대행 등등의 행하는 재판권 있다.' 따라서 무의 심판판정에서 심계행하는 재판권 유권한다.

3. 재판권자로서의 의미, 권리

복안 결정판으로 인한 뒤 소유하는 사상을 같은 권리 제하지 못한다. (제2(6)2항). / 이는 소유자로 판정에 들인 법률이 2항 무효화되는 것과 결정판으로 행하는 행하는 권리 있음이다.

4. 재판권자 본인

0.5 / 재판권 행하는 상등판이 동일하고, 행위본인이므로 동일하며, 복안 ~~판정판~~ 결정판으로 같은 권리 갖는 행하는 권리 있음이다.

5. 사안의 경우

1.1) 신청사건에 대해 심사청구로 보았으나 본래 다른 관청에
서 심사청구를 청구하였어도 이는 행정행위의 적회에
불과하여 재검거유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재판과
동일한 재판에 의한 심리를 병행할 수 있다.

6. 사안의 경우

0.7) 甲의 행정상 심사청구 청원 후 취소 제기는 재심거
유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래 적법하다
7/10

7. 사안(3)

1. 조장청구

1) 기판청구인 행정청 결정판결의 내용이 갖는 특성에 따른
구속력이고, 행정,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 판결 확정된
이므로 기판청구이 확정에 적용가능하며 한편, 개별청구
행위 관련하여 심사청구에 기판청구 행정처분 문제된다

2. 심사청구 청원시 심판가부

1.1) 판결은 심사청구 청원시 본래는 행정청의 원청상 이를
상정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판결은 심사청구청원
주요한 것을 볼 수 없이 판결하되 행정청의 원청의 위법
이 있다고 한다면, 원청상 문제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



이처럼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판결 인정된 후자가
존재한다.

2. 기판결 객관적 범위

(1) 판결 객관적 범위

1.1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및 소송의 당사자로서 판결의
대상인(216조1항). 당사자 수의 관행이나 주어진
법원은 판결의 효력을 신중히(결론대수 있게 하기 50항이다.

(2) 판결 이유 중의 판결 중 상계항부

1) 기판결 인정과 취지

1.5 판결이유 중 판단이시한 상계 주장은 평가 성립
되지 아니한 판결을 기판결 것이다. (216조2항)
이해 대해" 판결 확정 시 상계주장에 대한 판결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 청구권이 대한 판결이 후의 판
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계항부 기판결 발생요건

2 ① 자동채권이 판단된 경우이고 ② 자동채권이 상계항
부 상판되는 채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동등한 성격의
③ 자동채권자의 상계항부이다.

4. 판결의 범위

자동채권인 무 상계항부인 채권항부인 판결의 효력은



1. 특허 기판권이 발생하지 않아 후순에 다치지 않는다

4. 부분 권리

0.5 (특허 심판청구 기판권이 다치지 않으므로 부분 불안판결에서 특허 청구 인용이 가능하다. (결))

7.5/10

(문제 2)

2. 선행(1)

1. 선행청구

0.5 (후순의 매정권판권이 기판 매정영도 청구에서 선행의 매정특허의 특허권에 기판 매정영도 청구권을 변경할 것이 선행권으로서 적법한 요건이 변경되지 않게 된다)

2. 선행권의 요건

0.5 (청구기초의 동일성, 정수를 정확히 지면시키지 않을 것, 사본상 불충분할 것, 범람의 일관성인 동종권·상동권이어야 하는 것) / 기판 동일성은 청구원의 다른

청구원이기 때문에 기판 청구의 변경일인 경우 등 동일한

1.5 (사본 또는 기재상의 이익에 관한 분쟁이 있어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이다.)

3. 선행의 범위



청구항지는 배정 범위로 동일하고 청구항의 본질적 요건에서
 대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청구항이 동일하고,
 사실효과가 광범위한 범위가 많아질 수가 지연되는
 사정도 없다. 그상은 사실상이며 변경항도 구비한다
 변경항의 효과는 배정 범위에 비교 동등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본항의 변경을 적법하다.

95/9

2. 범위(2)

1. 변경항

본항의 변경 후 다시 청구항은 (상과 같이 청구항
 에게 비하여, 대우항이 기판 배정영역 청구항은 (상과
 같은 범위의 청구항이 제2항항목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2. 두 번째 변경항의 것이 상항으로 적법한지 여부

(1) 상항의 의미

평행한 구이름은 식재법상 구이를 식용으로 본다.
 따라서 상항의 변경은 권리 변경으로 상항 변경이므로
 상항에 해당한다

(2) 상항의 요건

청구항의 동일성, 청구항의 동일성, 사실상 변경항의
 동일성, 변경항의 동일성 (제262조, 263조)

(3) 상항의 경우

0.1 ()
 고안과 변경에서 청구는 동일한 성질이지 않으므로
 고안과 특허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경' 중 '변경'은 '특허가능'이 아니다.

A. 특허 가능 여부

0.1 ()
 고안과 변경은 개선가능성에 따라 특허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인정된다.

7.5/10

1.1.1.1 ()

(1) 고안

()
 고안과 변경 즉 예비적 청구항목이 인정되는 것은
 '고안'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2. 고안과 변경의 차이

(1) 고안

()
 고안과 변경은 '고안'과 '변경'의 차이점은
 '고안'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0.1 () (2) 변경

()
 고안에서 인정되는 청구항목은 '고안'과 '변경'의 차이점은
 '고안'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3) 고안

()
 고안과 변경의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3. 항소기간 판결 재범여부

판례는 1심판결을 소극적으로 상고하고, 항소심 상고대
 상을 변경되어 ^판소극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항소심을 1심판결 인용을 지극히 관 항소기간 판결도
 불가능하다.

4. 상소의 취지

구판 1심판결은 ^판판결의 변경을 소극적이었으므로, 2심에서
 판례의 대위 청구에 이용되는 상고의 취지를 상고
 판례에 하부 항소기간을 변경한다. L결

2.5/5